

# 유엔 아동 권리 조약 선택의정서 심의

## 1. 출장 개요

### □ 출장 목적

- 유엔 아동 권리 조약 선택의정서 심의에 한국대표단 일원으로 참여
  - ※ UN총회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2개 선택의정서 채택 ('02.5.) 동 협약 비준('04.9.) 및 국가보고서 제출 ('07.3.)에 따른 심의 참여
- 대표단 영어 관련 업무 지원

□ 출장 기간 및 장소 : 2008.05.21(수)~2008.05.25(일), UN 아동 권리 위원회(제네바 소재)

□ 출장자: 이 미 성

### □ 참가자(한국대표단 및 지원업무자)

- 김두현, 아동청소년활동정책관, 보건복지가족부
- 고영숙, 아동청소년성보호과 사무관, 보건복지가족부
- 최승남, 아동청소년권리과 사무관, 보건복지가족부
- 홍관표, 인권정책과 서기관, 법무부
- 김민아, 창의혁신담당관실 사무관, 여성부
- 김자영, 운영지원과 인턴, 여성부
- 광배숙, 동시통역사

### □ 심의 일정

- 2008년 5월 23일(금), 10:00~13:00, 15:00~18:00

## 2. 심의 주요 내용

### □ 수석대표 모두발언 (붙임 참조)

- 선택의정서 이행강화를 위해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설치 및 아동권리옴부즈퍼슨 위촉
- 아동권리협약에 대한 홍보 및 권리교육 교재를 통한 권리교육 강화
- 병역법에 의해 아동의 무력분쟁 참여를 엄격히 금지
- 아동매매는 각 관련법에 의해 처벌되며 아동매매 사례 없음
- 성매매 근절을 위해 성매매방지종합대책('04), 아동안전종합대책('03) 등 수립 및 점검단 운영, 신상공개제도 운영('02~'07), 신상정보 등록·열람제도 및 취업제한('08)
-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시행('04), 특정성폭력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에관한법률('07)
- 친고죄 폐지 및 아동성폭력 전담센터 설치 운영(3곳)

- 성범죄 피해·가해 청소년 교육·치료
- 외국에서 성매매 관련 범죄자들에 대한 여권반납 가능토록 여권법 개정('08)

□ 의원들의 질의 및 대표단 답변 요지

**[아동의 무력분쟁]**

- **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의 국내적 적용**
  -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가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판결에서 직접적으로 인용된 사례는 없음
  - 이는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국내법이 적용되기 때문이고,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의 국내적 효력을 부정하기 때문이 아님
- **북한 아동이 망명하거나 난민신청을 한 경우의 보호**
  - 북한지역을 벗어나 대한민국 내로 들어온 북한 아동은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난민으로 보지 않으며, 북한이탈 아동에 대해서는 국내정착을 위해 생활 및 교육에 관한 지원을 하고 있음
  -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책협의회에서 북한이탈 아동에 대한 보호 여부를 결정함.
  - 북한아동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보장된 권리와 의무를 보장함. 또한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복송하지 않음.
- **망명·난민 아동의 보호**
  - 망명 및 난민 아동에 대해서는 신원확인, 건강진단 및 치료를 하고 있고, 난민으로 인정된 경우 거주 자격과 난민인정협약에서 규정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음.
  - 이러한 지원 내용에 대해서는 난민신청아동에게 알려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하고 있음. 난민 신청 단계에서도 인도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.
- **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의 후속조치**
  - 2007년 12월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로마규정에 규정된 모든 범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함
- **무력분쟁 국가에 대한 소형무기 수출 여부**
  - 소형무기 수출 관련, 국제적인 노력에 동참, 소형무기 유엔 행동계획을 이행하고 있으며 이행 국가 보고서를 제출
  - 한국이 소형 무기를 포함하여 군수 물자 수출하고 있으나, 정부는 엄격한 기준에 의해 수출 허용 및 최종 사용자 증명을 조건화하여, 소형 무기가 불법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있음
- **오타와 협약 가입 여부**

- 오타와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으나 CCW지뢰 의정서에 가입하여 안전하게 지뢰를 관리하고 있음. 또한 지뢰와 관련한 사고 보고된 바 없음.
- 대한민국은 CCW의 지뢰, 불발탄 제거를 위한 제2 의정서와 제5의정서에 가입하여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고,
- UN에 지뢰제거기금을 제공하여 지뢰제거 활동에 참여, 1995년 지뢰 수출 모라토리움을 선언, 한국 관할 지역의 매설된 지뢰를 지속적으로 제거 중에 있음.

◦ **18세 미만의 무력분쟁 참여가능 여부**

- 병역법 개정을 통해 18세 이상이 징집 대상이 되며, 17세 아동이 사관학교에 입학할 수도 없기 때문에 무력분쟁 참여는 불가능

◦ **무력분쟁지역에 파견하는 한국군에 대한 인권교육 여부**

- 이라크 레바논과 같은 분쟁 지역의 평화 유지, 피해복구, 주거시설 등의 업무에 한정하여 군대를 파병하고 있음.
- 파병 시에는 국제조약이 정하는 인권행동강령등을 사전에 교육하고 있으며, 향후 UN CRC 정신에 대해 교육을 강화하겠음
- 또한, 동티모르, 팔레스타인, 콩고, 수단 등 무력분쟁국가의 아동을 위해 학교 건설, 컴퓨터 교육, 직업 교육 등 다양한 사업 추진하고 있음

**[아동성매매, 성폭력, 포르노그래피에 관한 선택의정서]**

◦ **유엔아동권리협약, 선택의정서 홍보 및 권리교육 여부**

- 권리교육 교재·웹·멀티미디어 등 다양한 교재 개발 및 교사, 소년보호직력 등 대상 교육을 추진
- 학교에서의 인권교육은 도덕·사회 과목에 협약 및 선택의정서의 정신이 반영되어 교육 추진되고 있음

◦ **의료관계자의 아동 성폭력 신고의무자 여부**

-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, 아동복지법 등에 의료인은 당연히 포함되어 있음

◦ **인터넷을 통한 성매매 방지 여부**

- 사이버분화 조성을 위한 아동 대상 교육, 인터넷서비스 제공자(ISP)에 대한 유해매체 차단 의무 부과를 위한 법 개정 추진 중이며, 청소년보호시간대를 아침 6시부터 저녁 24시까지 확대 할 예정임
- 또한 인터넷을 통한 아동의 성매매 유인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도록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개정 추진 중이며, 성매매 예방 교육과 캠페인도 동시에 실시하고 있음

◦ **입양허가제 및 헤이그협약 비준 여부**

- 국내입양이 좀 더 활성화되고, 헤이그협약을 비준하기 위한 민법 개정 등 관련법규의 충분한 검토와 개정이 먼저 선행되어야 함
- 또한 불법입양은 입양촉진특례법에 의해 규제 및 보호되고 있음

◦ **아동성폭력범죄 처벌 및 성인대상 성폭력 범죄와의 차이**

- 아동이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인 경우에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는 한 처벌할 수 있으며, 범죄의 정도가 심한 일정한 경우와 13세 미만의 아동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음.
- 이러한 점에서 친고죄인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와 차이가 있음. 아동피해자와 성인피해자의 보호의 기본입장은 동일하지만 아동피해자에 대하여 보다 특별한 보호가 가능한 경우가 있음

◦ **형사절차에서의 피해아동 보호**

- 2007년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법원의 증인신문절차에서 피해아동이 비디오 중계 장치나 차폐장치를 통해 피고인과 대면하지 않고 증언할 수 있도록 하고, 수사기관과 법원의 절차에서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함.
- 또한 아동 약취·유인, 여아 매매, 13세 미만의 여아와의 성관계 등 일정한 범죄와 관련해서는 신문보도나 방송이 금지되어 있고 피해아동에 대하여 신변안전조치도 가능함

◦ **음란물 소지 및 음란만화 처벌 여부**

-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음란물의 단순한 소지만으로도 처벌됨
- 형법과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을 묘사한 음란만화도 아동음란물로 처벌 가능함

◦ **국제결혼과 아동매매**

- 2007년 민법이 개정되어 남녀 모두 혼인가능연령이 18세로 변경되어 향후 아동이 국제결혼의 대상이 될 수 없음.
- 민법 개정 전에 국내에 들어온 국제결혼아동에 대해서는 성폭력 및 가정폭력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예방·보호·구제조치를 제공함
- 또한, 2007년도에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결혼중개업자에 대한 규제와 관리를 강화함.

◦ **피해청소년에 대한 의무적 치료 여부**

-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따라 성폭력 등 피해청소년에 대해서는 치료·재활을 추진하고 있으나, 낙인효과 방지를 위해 자율적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음
- 시설에서 보호받는 이들의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하여 사회적 낙인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하고 있음.

◦ **자료의 수집·관리 및 조정**

- 선택의정서와 관련된 자료에는 범죄정보와 같이 사생활과 민감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이러한 정보를 집중하는 것은 개인정보 측면에서 바람직하지만은 않음.
- 형사특별법의 개별조항 및 피해자를 기준으로 한 통계자료가 불충분한 면이 있지만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범죄통계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.

◦ **아동 피해자에 대한 대책**

- 성매매와 성폭력 피해자를 위하여 상담소, 쉼터, 자활지원 센터와 같은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.
- 13세 미만 아동에 대해 전문적인 상담과 치료를 제공하는 아동 성폭력 전담센터가 전국에 3개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, 전국적으로 확대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.
-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대한 법률에 의하여 19세 미만 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이 별도로 설치 운영되고 있음. 이 곳에서 청소년 성매매피해자에 대해 의료, 법률, 진학 훈련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음.

### 3. 의의 및 제언사항

- 이번 심의는 우리가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에 가입한 이후 최초로 받는 심의였으며, 이번 심의는 동 의정서의 국내 이행상황을 전반적으로 점검/평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.
- CRC 위원들은 특히 아동보호 및 아동매매·아동매춘·아동 음란물 문제 관련 동 의정서를 충실히 이행하여 줄 것을 당부하는 등 선택의정서의 실제 이행 여부에 대해 관심을 두었고, 관련 법령과 제도의 도입·개정을 촉구하였음.
- 이번 심의 시 비중 있게 다루어진 유엔아동권리 협약 유보 철회 및 헤이그 협약 비준, 통계 관리 및 아동 정책 총괄·조정 강화, 선택의정서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의 처벌 법제화 등은 향후 우리나라의 인권상황을 평가하는 중요한 이슈인 만큼, 향후 관련 법제도 개선 및 정책 방향 설정 시 특별히 관심을 두어야 할 필요가 있음.
- CRC 의원들은 또한, 보다 효율적인 아동보호를 위해서는 한국 정부가 일관된 아동보호 관련 행정체제를 갖추어 나가야 할 것임을 지적하고, 복지부와 여성부, 법무부 등에 분산되어 있는 아동보호 기능을 좀 더 유기적으로 결합하고, 조정기능을 강화하며, 아동관련 통계의 성에 따른 분류화 및 경로 단일화를 요구함.
- 심의는 동 협약의 국내 이행상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심의인 만큼 동 협약과 관련되는 모든 부처의 담당자가 심의에 참여하여야만 위원회로부터 제기되는 각종 질의와 권고에 대해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으므로, 향후 대표단 구성 시에는 외교부 포함 모든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대표단 구성이 필요함. 이에 더해, 다음 번 심의를 위해 먼저 경험한 인력과 향후 준비단 간의 사전 협의 및 교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임.
- 이번 심의 시 한-영 동시통역을 활용, 보다 원활한 질의·응답을 기하고자 하였으나 일부 세부 내용에 대한 질의·응답 시 위원회 측과 우리대표단간 의사소통에 다소 문제가 발생, 일부 부분에서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한 점이 있었음. 향후 심의 시에는 동시 통역자와 대표단 간 리허설 등 보다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